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제18-21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6. 04. 23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7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 시 : 2026년 05월 06일(수)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학교법인 회의실
3. 참석이사

구분		인원	성명
이사	참석	7명	정선, 고성주, 고순애, 김남기, 우창록, 원선희, 최이규
	불참	0명	
감사	참석	2명	곽웅기, 임진철
	불참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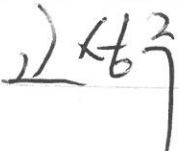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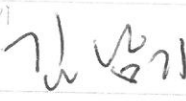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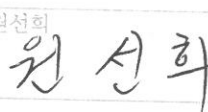
4. 이사회 성립 선언

의장 정선 이사장, 제18-21차 이사회가 2026년 05월 06일(수) 오전 10시 10분에 학교법인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7명 중 7명이 참석하고, 감사 2명 중 2명이 참석하여 법인 정관에 의거, 적법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5. 안건 채택

정선 이사장이 아래의 안건들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다. 이에 김남기 이사의 동의와 최이규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을 채택하다.

- 제01안건 등촌중학교 2027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계획
- 제02안건 강서대학교 2025학년도 결산(안)의 건
- 제03안건 강서대학교 영외 기숙사 임차 및 건축기금 용도 변경의 건
- 제04안건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정관 개정의 건
(강서대학교 직원 직제표 등 개정)
- 제05안건 학교법인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건
- 제06안건 학교법인 2025학년도 결산(안)의 건
- 제07안건 등촌중학교 교장 선임 절차에 관한 건

고성주 	김남기 	원선희 
--	--	---

기타안건

- 보고사항
1. 강서대학교 2027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안 보고
 2. 강서대학교 2025학년도 예비비 및 예산전용 보고의 건
 3. 학교법인 2025학년도 예비비 및 예산전용 보고의 건
 4. 학교법인 감사처분 이행현황 보고의 건
 5. 학교법인 2025학년도 업무보고

6. 안건 심의

제01안건 등촌중학교 2027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계획

등촌중학교 권영재 교장이 2027학년도의 신규교사 채용계획을 설명하다.

학교명	학년도	(예정) 학급수	정원	정규 교원수	기간제 교원수	퇴직(예정) 인원		신규채용	
						8월	2월	과목	인원
등촌 중학교	2026	16	30	23	7	2	0		
	2027	15	28	21	7	0	0	국어	1
								보건	1
2028	15	28	20	8	0	0	영어	1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김남기 이사의 동의와 최이규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02안건 강서대학교 2025학년도 결산(안)의 건

강서대학교 이상철 사무처장이 강서대학교 2025학년도 결산(안)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다.

기관명	2025학년도 결산액	2025학년도 예산액	증감액
강서대학교	21,431,139,878	20,729,647,886	701,491,992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우창록 이사의 동의와 최이규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03안건 강서대학교 영외 기숙사 임차 및 건축기금 용도 변경의 건

박철형 기획처장이 강서대학교 영외 기숙사 임차 및 건축기금 용도 변경의 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1. 영외 기숙사 확보 필요성 및 법적 근거
2. 영외 기숙사 시설 구성 계획

고성주 고성주	김남기 김남기	원선희 원선희
------------	------------	------------

3. 이사회 심의 요청 사항

가. 영외 기숙사 임차 추진의 승인

나.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한 건축기금의 용도변경 승인(70억 원 이내)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우창록 이사의 동의와 고순애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04안건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정관 개정의 건

강서대학교 이상철 사무처장이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조항	개정 내용	개정 사유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신설)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급휴가 인정	· 감사 지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2조 (하부조직)	시설관리과->시설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기능을 통합 관리
별표 2 (대학 직원 직제표)	8급~3급까지 각 1명 증원, 9급 1명 삭제 (총 5명 증원)	· 국제교육교류원 최초 7명 총원 후 조정 필요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고성주 이사의 동의와 김남기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05안건 학교법인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건

학교법인 이윤영 사무처장이 학교법인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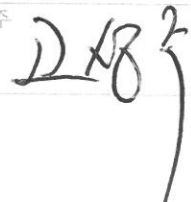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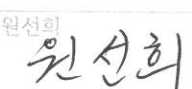
1.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 지급기준 : 2026학년도 예산 반영
2. 경조비 등 지급기준 : 실비 성격의 예산 현실화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임직원 경조비 지급기준액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정정 후 승인할 것을 고성주 이사의 동의와 최이규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06안건 학교법인 2025학년도 결산(안)의 건

학교법인 이혜영 주임이 학교법인 2025학년도 결산(안)의 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기관명	회계구분	2025학년도 결산액	2025학년도 예산액	증감액
학교	일반업무회계	1,021,774,889	1,088,793,057	-67,018,168
	법인	수익사업회계	6,565,088,273	6,649,531,779

고성주  김남기  원선희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최이규 이사의 동의와 김남기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07안건 등촌중학교 교장 선임 절차에 관한 건

학교법인 이윤영 사무처장이 등촌중학교 교장 선임 절차에 관한 건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하다.

(제1안) 등촌중학교 추천 방식 : 직전 교장 선임절차와 동일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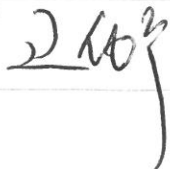


(제2안) 공모 방식 : 교육청, 강서대학교, 등촌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이에 이사들의 논의 후 제1안대로 할 것을 최이규 이사의 동의와 고순애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보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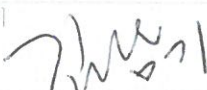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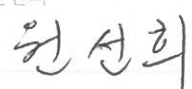
1. 강서대학교 2027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안 보고- 박철형 기획처장
2. 강서대학교 2025학년도 예비비 및 예산전용 보고의 건 - 박철형 기획처장
3. 학교법인 2025학년도 예비비 및 예산전용 보고의 건 - 이해영 주임
4. 학교법인 감사처분 이행현황 보고의 건 - 이윤영 사무처장
5. 학교법인 2025학년도 업무보고 - 이윤영 사무처장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간지 서명은 고성주, 김남기, 원선희 이사가 하기로 하고, 김남기 이사의 동의와 최이규 이사의 재청과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오후 1시 20분에 폐회하다.

고성주 	김남기 	원선희 
--	--	--

별첨) 정관신규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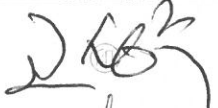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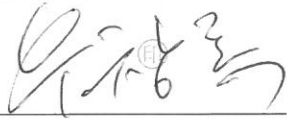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삭제)</p> <p>④ <신설></p>	<p>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삭제)</p> <p>④제44조 제7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p>																																		
<p>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를 두며 대학원에 교과과를 둔다.</p> <p>②교무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학생처에 학생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과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④기획처에 기획예산과, 평가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⑤사무처에 총무과, 시설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를 두며 대학원에 교과과를 둔다.</p> <p>②교무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학생처에 학생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과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④기획처에 기획예산과, 평가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⑤사무처에 총무과, 시설안전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별표2)대학 직원 직제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총원</td> <td>2급 (이사관)</td> <td>3급 (부이사관)</td> <td>4급 (서기관)</td> <td>5급 (사무관)</td> <td>6급 (주사)</td> <td>7급 (주사보)</td> <td>8급 (서기)</td> <td>9급 (서기보)</td> </tr> <tr> <td>45</td> <td>1</td> <td>2</td> <td>6</td> <td>8</td> <td>8</td> <td>9</td> <td>10</td> <td>1</td> </tr> </table>	총원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45	1	2	6	8	8	9	10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총원</td> <td>2급 (이사관)</td> <td>3급 (부이사관)</td> <td>4급 (서기관)</td> <td>5급 (사무관)</td> <td>6급 (주사)</td> <td>7급 (주사보)</td> <td>8급 (서기)</td> </tr> <tr> <td>50</td> <td>1</td> <td>3</td> <td>7</td> <td>9</td> <td>9</td> <td>10</td> <td>11</td> </tr> </table>	총원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50	1	3	7	9	9	10	11
총원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45	1	2	6	8	8	9	10	1																											
총원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50	1	3	7	9	9	10	11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고성주 	김남기 	원선희 
--	--	--

이에 서명 날인하다.

2026년 05월 06일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이사장	정 선	
이사	고 성 주	
이사	고 순 애	
이사	김 남 기	
이사	우 창 록	
이사	원 선 희	
이사	최 이 규	
감사	곽 응 기	
감사	임 진 철	